## 『SMR 규제연구 추진단』추진단장 공모

「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」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추진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023년 12월 22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### 1. 사업개요

### 가. 사업 목표

- 경수형 기반 SMR 인허가 대비 규제체계정비 및 예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유 규제 기술 개발
- 나. 사업규모 : 총 360억원('22~'23년 사업비 44.8억 포함)
- 다.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8. 12.
- ※ 추진단 운영기간: 2024.1(예정) ~ 2028.12.(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및 추진단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)

#### 라. 사업 주요 내용

- (안전규제 법령/체계 개발) SMR 안전 현안도출 및 해결과제와 연계하여 설계특성 기반 국내 규제체계 적용성 분석 및 국제기구, 국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SMR 고유 안전규제 체계 개발
- (안전현안 해결 규제기술 개발) SMR 설계특성 관련 예상되는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SMR 설계단계에서의 주요 설계요건 분석 및 고유 규제검증기술 개발
- (핵비확산·핵안보 측면의 규제요건 개발 및 체계구축) 설계단계 SMR 핵비확산성 검토 및 수출입통제 요건 개발,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측면의 위해도 분석 및 규제방향 정립

### 2. 추진단장의 임무 및 자격

### 가. 추진단장의 임무
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·변경
- 추진단이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적(기획, 평가, 진도관리,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) 총괄 관리 및 운영
- 추진단 조직의 구성, 운영, 관리 등 추진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·보고에 관한 사항
-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
- 연구개발과제의 상시 기획관리·역무조정
- 규제연구를 대표하여 i-SMR 기술개발사업단 등과의 소통
-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

#### 나. 추진단장의 지원 자격

-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
-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산ㆍ학ㆍ연 전문가
-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관리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역량을 보유한 자
- 도덕성을 보유하여 리더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추진단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참여하고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다른 업무의 정리 등을 통해 임용기간 동안 추진단 관리에 전념이 가능한 자 (단, i-SMR 기술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추진단 설립 이전 참여과제 등을 정리하여야 함)
-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 독립성의 확보가 가능한 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의한 국가연구개 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

### 다. 추진단장의 근무조건

-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, 타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능함
- ※ 기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, 추진단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해야 함(단, i-SMR 기술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추진단 설립 이전 참여과제 등을 정리하여야 함)
-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교체 가능
- 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, 평가에 따라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임 가능
- 추진단장의 보수는 타 유사 사업단장 연봉(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포함)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
- SMR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 불가 (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)
- ※ 추진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임

### 3. 추진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

### 가. 추진단장 선정절차

1단계 서면 평가	2단계 발표평가	3단계 추진단장 선정
- 3배수 이내 2단계 평가 대상자 선정	- 지원자별 사업계획 구두발표 및 평가	- 설립준비위원회 심의·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후 최종 선정

- ※ 최초 접수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7일간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, 추가 접수 시에도 3명 미만일 경우 1단계 평가를 제외하고 2단계 평가를 실시
- 1단계(서면평가):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3인 이내 2단계 평가 대상자를 선발함
  - ※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
  - ※ 1단계 평가 결과 신청자 전원이 부적격일 경우 7일간 재공고
- 2단계(발표평가): 지원자 발표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
  - 1) 평가 대상 : 지원자 중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
  - 2) 평가 일시 및 장소 :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
  - 3)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: 지원자별 발표 20분, 질의응답 및 토론 30분
  - 4) 발표 내용 : 사업에 대한 비전, 추진단 경영관리 계획,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,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

- 5) 발표 양식 : PPT 사용(별도의 양식 없음)
- ※ 2단계 평가 대상자 전원이 만점의 60% 미만일 경우 7일가 재공고
- 최종 선정 :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여 최종 선정
  -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선정 이후 추진단장의 적격요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### 나. 주요 평가 기준

- 추진단장 전문성 및 역량(30%)
- 비전 및 리더십(20%)
- 사업추진계획(40%)
- 추진단 운영 및 성과관리(10%)

### 4. 구비서류

- 가. 추진단장 신청서(2부 및 전자파일)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전자파일, 서명날인)
- 나.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
  - ※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# 5. 신청 및 접수방법

- 가. 신청방법 : 추진단장 신청서(【첨부1】 "SMR 규제연구 추진단" 추진단장 신청서식) 및 개인정보 등 제공·활용 동의서(【첨부2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)
- 나. **접수기간** : 2023.12.22. ~ 2024.1.15.(25일간)
- 다. 접수방법 : 우편,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(접수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)
- 라. 접수처: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 연구개발관리센터(csr@kofons.or.kr)
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(삼평동, 디티씨타워 1관 8층)

마. 문의처 :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 연구개발관리센터 최수룡(031-626-6069)

# 6. 향후 추진 일정(안)

가. '24. 1월중 : 1단계 서면평가 결과 발표(개별통보)

나. '24. 1월중 : 2단계 발표평가

다. '24. 1월 말 : 최종 결과 발표(개별통보)

※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【첨부1】 "SMR 규제연구 추진단" 추진단장 신청서식

# 추진단장 신청서

# 1. 인적사항

성명	국문	(한문)	생년월일	YYYY-MM-DD
00	영문		6건물로	טט-וואוואו-דר
소속	기관명		부서명	
21年	주소		직위	
어라+J	전화		Fax	
연락처	휴대폰		E-mail	

# 2. 학력

구분	기간	학교	전공	학위
대학교(학사)				
대학원(석사)				
대학원(박사)				
최종학위 논문제목				,

# 3. 경력

기간	기관	직위(직급)	비고

# 4. 포상 실적 등 기타 업적

포상명	포상등급	수상날짜	수상기관

# I. 경영관리

# 1. 기획/관리능력

### 가. 원자력 분야의 프로젝트 기획·관리 경험 및 능력

※ 최근 10년 이내 원자력 분야 프로젝트 <u>기획·관리</u> 실적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수행능력 등을 자세히 제시

<b>(A</b> <sub>4</sub>	2장	내외)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

# 나. 주요 조직관리 경력

※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경력에 대하여 기술

조직명	역할	관리기간	주요 관리내용

### 2.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

### 가. 원자력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

※ 최근 10년 이내 원자력 분야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간략히 기재

프로젝트명	수행 기관	PM	프로젝트 기간	역할 (PM 또는 참여자)	프로젝트비 지급기관	프로 <sup>조</sup> 기획비	 비고

※ 비고란에는 프로젝트 성과와 현황 등을 간략히 기재

### 나. 원자력 분야의 활동 수행 실적 및 성과

※ 원자력 분야 활동 수행 실적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

$(A_4)$	2장	나	오	l)
---------	----	---	---	----

## 다. 원자력 분야의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및 국제활동 수행 실적

※ 최근 10년이내 원자력 분야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

위원회명	주관부처	참여기간	역할 (위원장 또는 위원 등)	주요내용

※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(학회 등) 활동

역할	활동기간	활동 중 주요 실적
	역할	역할 활동기간

1. 사업에 대한 비전 및 철학(A4 3장 내외)
2. 추진단 운영계획 (추진체계, 조직구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등)(A4 2장 내외)
3. 추진단 관리 및 추진 전략(A4 3장 내외)
4. 규제연구 성과 도출 및 관리방안(A4 3장 내외)
5. 연구성과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 규제활용 제고 방안(A4 3장 내외)
6. 기타(A4 1장 내외)

Ⅱ. 추진단 운영방안

### 【첨부2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#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조사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결격사유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해당 결격사유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#### 결격사유 조사 항목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본인 동의
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 서명	자필 서명

■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#### 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
-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결격사유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됩니다.
-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결격사유조 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